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DOJ, HBO의 전직 이사에 대해 공소 제기

Home Box Office Inc.(이하 HBO)의 전직 이사가 필름인화업자로부터 43만 9천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고 입찰 조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필름인화업을 하는 회사와 그 소유주도 관련 공모에 참가한 혐의로 역시 기소됐다.

HBO에서 인화담당업무를 맡은 전직 Michele Komack씨는 입찰조정, 공모 및 조세포탈 혐의로 맨하탄 연방 지방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필름인화 사업을 하는 Westbury Press Inc.(이하 Westbury)사와 그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인 Sanford Zenker씨 역시 HBO와 인화사업 계약에 대한 대가로 Michele Komack 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

소됐다. 현재 Zenker씨와 Westbury사는 연방법무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BO는 TV방송서비스 회사로서 맨하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두 개의 24시간 TV방송서비스(HBO와 Cinemax)를 미국 전역에 케이블, 위성 및 초단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Komack씨는 HBO에서 인화와 관련된 구매를 책임지고 있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그녀는 관련 회사들과의 사업계약을 조정해 주는 대가로 네 개의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형의 공모는 회사들이 자사의 직원들로부터 정직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활동에 해를 끼치는 동시에, 경쟁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omack씨는 1997년 9월부터 1999년 2월까지

HBO사에 상업적 인화물을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할당하고 입찰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또한 대략 1993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뇌물수수, 사기 및 세금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 1999년 기간중에는 자신이 받은 리베이트 수입을 기재하지 않은 채, 세금환급 신고를 하기도 했다.

Zenker씨와 Westbury사 역시 1990년대부터 2000년 3월까지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2004. 2. 3. 연방법무부

DOJ, 사기행위 공모자들을 공소

뉴욕에서 사무실 매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와 두 명의 구매담당자들이 금품횡령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범죄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들 세 명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Weiss씨는 뉴욕에서 사무실 매매업을 하는 Parchment & Chrome Inc.의 소유주이다. Einstman씨는 코네티컷에 본사를 두고 금융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Greenwich Capital Markets Inc.에서 구매담당으로 일을 했었다. Murphy씨는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선적회사인 MOL (America) Inc. (Mitsui O.S.K. Lines의 후신)의 구매담당으로 활동했었다. Einstman씨와 Murphy씨는 모두 사무실 개설 및 구매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Parchment & Chrome사의 고객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Weiss씨는 자신의 회사인 Parchment & Chrome로 하여금 Greenwich Capital Markets와 MOL사에게 운송한 사실도 없는 물건들에 대한 대가를 허위로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urphy씨와 Einstman씨는 물건을 수령했다고 허위로 서명을 해주고, 자신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Parchment & Chrome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 Parchment & Chrome의 계좌로 입금되면, Weiss씨는 Einstman씨, Murphy씨와 함께 이를 나누어 가졌다. 1998년 중반부터 2002년 4월까지 Parchment & Chrome사는 Greenwich Capital Markets사에 대해 약 24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Weiss씨는 이 중 약 12만 달러 상당액을 현금, 항공표 및 자동차 등의 형태로 Einstman씨에게 지급했다. 또

한 1997년 9월부터 2002년 3월 동안에는 MOL에게 약 8만 달러를 청구하여, 이 중 약 4만 달러 정도를 Murphy씨에게 현금, 각종 티켓 및 자동차와 주택의 리스 비용으로 지출했다.

Weiss, Einstman 및 Murphy씨는 사기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보호관찰 및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번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법정 최고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이익이나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의 손실을 전액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독점금지국 뉴욕사무소가 광고산업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 오던중 적발하여 기소하게 된 것이다.

2004. 2. 4. 연방법무부

EU

EU위원회,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제한 요소 철폐

EU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전문직 사업자단체들과 규제기관들에게 변호사와 건축사들간의 경쟁제한적인 가격 고정이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들이

공익상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를 전환하거나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비스 부문은 유럽연합 역내에서의 주요 성장동력이며,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완화된 규제는 사업활동의 측면에서나 소비자에게 보다 경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이며, 이는 유럽 역내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리스본 협정과도 부합한다”고 Mario Monti 경쟁위원은 말했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에서, EU위원회는 대부분의 규제들은 회원국 차원에서 보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5월 1일부터 유럽 경쟁법의 집행을 분권화하기로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의 경쟁당국을 통해 감독활동을 할 계획이며, 회원국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만을 규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엔지니어 및 약사들의 경쟁상황을 조사하면서, 가격이나 광고 기타 요소들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경제적 편익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당하지 않은 이러한 제한의 철폐를 회원국 정부와 경쟁당국 및 전문직 사업자단체에 요구한 것이다.

2004. 2. 9. EU위원회

EU위원회, Air France와 KLM 기 업결합 조건부 승인

EU위원회는 Air France와 KLM 기업결합을 파리-암스텔담 노선과 유럽-미국 노선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성공적으로 해소할 것을 조건으로 이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따라서 유럽 항공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Air France와 KLM은 매일 94회의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이용권한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쟁 항공사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노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 노선에서 소비자들은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경쟁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EU위원회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 정부는 경쟁사들이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경우 파리와 암스텔담을 중간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그 동안 항공 분야에서 소유권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던 결합의 형태인 제휴(alliance)와는 다른 형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케이스는 그 동안 유럽 항공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기업결합에서 경쟁법이 충분히 고려되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있다. KLM과 Air France간의 기업결합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다양한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결합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Mario Monti 경쟁위원은 말했다.

지난 2003년 12월 18일 Air France와 KLM은 Air France가 KLM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를 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유럽내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 그룹이 탄생되기는 했지만, 결합기업들의 네트워크는 상호간에 상당히 보완된 것으로 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가령 Air France는 남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보다 강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KLM은 북유럽과 극동 아시아 등의 장거리 노선에서 주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건 기업결합으로 KLM 이용객들은 현재보다 많은 90여 개의 목적지로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Air France 이용객들도 40여 개의 신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Air France와 KLM의 기업결합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며,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하는 동시에 양사의 노선망이 결합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그 동안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 항공 부문에서의 합병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질적으로 유럽내 최초의 기업결

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Air France/KLM 기업결합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완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14개의 유럽 내 및 국제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간 위원회의 경험에 의하면, 항공 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은 유럽 공항내 활주부가 극도로 정체되어 있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되며, 파리와 암스텔담 공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EU위원회가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ir France와 KLM은 매일 47회의 왕복 활주로 이용권한, 즉 94회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활주로 이용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매일 1회의 왕복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4회에 걸친 활주로 이용을 해야 한다. 즉, 출발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로 이용과 도착공항에서 착륙을 위한 활주로 이용에 되돌아오는 경우에 마찬가지로의 공항 활주로 이용 2회를 더하면 모두 4회가 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만큼 경쟁사는 활주로 이용권한을 더 가지게 된다.

또한 네덜란드와 프랑스 정부는 유럽내 다른 도시나 미국으로 향하는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파리와 암스텔담에서 중간 기착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EU위원회와 합의를 했다.

2004. 2. 11. EU위원회

통신청, 2004/2005년도 운영계획안 발표

통신 및 방송 부문 규제기관으로서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통신청(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연간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운영계획안은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 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Ofcom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기본적으로 비개입주의를 지향하면서,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Ofcom은 올해 특히 다음 3개 주요 영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 공중 방송서비스
- 전체 통신시장
- 무선통신 및 방송에 이용되는 주파수

3개 주요 영역에 대한 검토 이외에도 다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효과적인 정책변환
- 사건의 조사
- 주파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제공

이와 같은 Ofcom의 업무들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통신·방송 네트워크의 발전 촉진

-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의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방송의 디지털화, 상업 방송 면허 및 주파수 사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올 봄에 중간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브로드밴드 서비스 발전
 - Ofcom은 브로드밴드 도매 및 소매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의 촉진에 역점을 둘 계획
 - 이를 위해 유선통신시장에서 경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EU 규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LLU(local loop unbundling) 시장평가를 시행할 예정
 - 또한 초고속 무선인터넷용 주파수 할당 및 디지털 관련 각종 권리의 보호·관리 등을 검토

2. 경쟁촉진을 통한 혁신 및 투자 장려

- 경쟁촉진
 - Ofcom은 유효경쟁을 확립함으로써 혁신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
 - 특히 통신시장에서는 전화기본료 상품(wholesale line rental), 접속료 규제, 전화안내 서비스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방송시장에서는 신독립상품코드

- 에 대한 감독과 방송도매시장 (television airtime sales market)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
- 불공정행위 규제
 - Ofcom은 비간섭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경쟁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활동을 집행할 예정
-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장려
 - 주파수는 한정적인 국가의 자원이므로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 면허취득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주파수 면허제도 개선
 - 현행의 주파수 면허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

3.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이익 보호
 - Ofcom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
 -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소비자 패널제도를 운영하여 이 들로부터 정보를 입수

2004. 1. 22. 통신청

일본

(주)일본통신교육연합회에 대해 배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일본통신교육연합회(이하 피심인)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4조(우량 오인)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동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근거해 배제명령을 실시했다.

피심인은 「일본 헬스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2002년 4월 무렵부터 2003년 5월 사이에 「신장법 강좌(伸長法講座)」라고 칭하는 통신교육 강좌의 비디오 등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월간 BiDaN」 등의 잡지에 게재한 광고 및 신문간지용 광고를 통해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1. 해당 강좌를 수강한 대부분 사람들의 신장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과 같이 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강좌의 수강생 중 약 80%가 5cm 이상 키가 커졌다는 것은 사실무근이었다.
2. 게재된 가수 및 여배우의 체험담을 통해 이들이 해당 강좌를 실제로 수강한 후 작성한 것인 양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수 및 여배우의 체험담은 실제 내용이 아니었다.
3. 해당 강좌를 많은 프로스포츠 팀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 같이 표시하고 있었으나, 프로스포츠 팀이 해당

강좌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피심인의 범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실시하고 있던 취지를 공시할 것과 향후 일반소비자에 대해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것 같은 표시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2004. 1. 28. 공정취인위원회

주식회사 카나카도 제작소에 대한 동의심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카나카도 제작소(이하 피심인)가 독점금지법 제53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해 동의심결을 받고 싶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구제조치를 정밀 조사한 결과 해당 구제적 조치가 적당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동의심결을 했다.

도쿄에서 수도미터기를 제조 판매하는 피심인 및 18개사는 2001년 7월 19일까지 지속되고 있던 합의에 근거하여 도쿄도가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 발주하는 건식 직독형의 구경 13mm, 20mm 및 25mm의 수도미터기에 대한 수주 가격의 인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수도미터기의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규제대상이 되지만, 피심인이 이와 같은 거래제한 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도쿄도에 통보하는 동시에, 향후 도쿄도가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 발주하는 수도미터에 대해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실시하기로 하며, 이를 자사의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구제조치안을 제출함으로써 공정위도 이러한 내용의 동의심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독점금지법 제53조의3에서는 공정위는 심판개시결정을 한 후 피심인이 심판개시결정서의 기재사실 및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여 공정위에 대하여 그 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결을 받을 뜻을 문서로서 요청하고, 또한 당해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또는 당해 위반행위가 시정된 것을 확보하고, 또는 독점적 상태에 관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취해야 될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서 기재의 구체적 조치와 동일한 취지의 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 2. 6. 공정취인위원회

미츠와 종합건설업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2월 6일 미츠와 종합건설업협동조합(이하 피심인)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54조의2 제1항 규정에 근거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피심인에 대한 심판개시는 이미 작년 8월 6일에 이루어졌었다. 이로써 조합원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동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심인은 모두 2,087만 엔의 과징금을 4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과징금 납부명령은 두 건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나온 결과이다. 첫 번째 사건(2003년(판) 제27호 심판 사건)에서는,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 내에 본점 또는 영업소 등을 두는 사업자를 입찰 참가자로서 일 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토목 일식공사로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카와고에시가 발주한 특정한 토목공사의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건(2003년(판) 제35호 심판 사건)에서는, 역시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내에 본점 또는 영업소 등을 두는 사람만을 입찰 참가자로서 일 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도장공사로서 발주하는 공

사에서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카와고에시에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위 첫 번째 케이스에서 피심인의 위반행위 실행기간은 19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5월 8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동안 피심인의 매상액은 2억 8,948만 5,000엔이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피심인의 위반행위 실행기간 역시 19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5월 8일까지로서, 이 기간 동안 피심인의 매상액은 5,859만 엔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두 케이스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율인 100분의 6이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 산정율인 100분의 3이 적용되는 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소규모의 사업자가 각 조합원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한 개의 독립한 사업주체인 지위를 얻는 것이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는 조합의 지구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자 등이지만 그 지역의 소규모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실시함을 통해 지역 독점체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소규모사업자뿐만 아니라 보다 큰 규모의 사업자도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사업협동조합 고유의 출자총액 및 종업원 수를 가지고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상법상의 회사 및 유한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에 각 조합원의 자본 혹은 출자의 총액을 더한 출자총액 또는 해당 조합의 것에 각 조합원의 것을 더한 상시 종업원 총수를 가지고 사업규모에 관한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어도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의 사업규모에 관한 요건에 해당할 때는, 동항을 유추 적용하고 해당 조합에는 경감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과거의 실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심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고, 상법상의 회사 및 유한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며, 과징금 산정시 피심인의 사업규모는 피심인 고유의 출자총액에 각 조합원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을 더한 출자의 총액은 21억 1,008만 엔 정도이며, 피심인과 각 조합원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총수는 1,875명 내지 1,884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서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6의 산정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2004. 2. 10. 공정취인위원회